

성주 선남 ~ 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4. 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제 1 장 사업의 개요	1
제 2 장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6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17
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제 1 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노선은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성주 ~ 대구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주 간선도로로 신규택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기존도로 확장을 통한 도로이용자 교통편의 제공·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음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보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비고 9. 같은 사업자가 두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	◦본 사업의 연장 : 8.58km ◦산지전용허가면적 : $\frac{8.58\text{km}}{10.00\text{km}} + \frac{93,377}{200,000\text{m}^2} = 1.32 > 1.00$	

주) 현재 산지전용허가 면적 미산출 단계로 임야 면적 적용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17. 12. : 성주(1, 2, 3차) 산업단지, 다사읍 신규택지로 교통량 증가, 상습 자정체 발생
(성주군, 대구시 건의)
- '18. 01.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후보사업」 건의
- '20. 01.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타('21 ~ '25) 대상사업 선정
- '20. 07. :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사업내용 수정
(L=10.61km → 9.51km)
- '22. 01. 10 :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2. 03. 14 : 밀양 부북-상동 등 2건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2. 09. 01 : 노선 관련 주민설명회(성주군 선남면, 달성군 다사읍)
- '23. 08. 28 : 노선 관련 주민간담회(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 '24. 01. 04 : 성주대교(구) 개축공사 준공 통보서 제출(도로공사2과-71)
- '24. 01. 26 ~ 02. 1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 '24. 03. : 결정내용 공개(예정)

1.4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성주 선남 ~ 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나. 위 치

- 시점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 종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다. 도로구분

-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국도Ⅲ)

라. 사업시행자 및 계획수립기관(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연장 및 설계속도, 차로수

- L=8.58km
- 60~70km/h, 6차로 확장(B=26.5m)

<표 1-2>

횡단폭원 결정

구 분		내 용	비 고
표 준 횡단구성	차로폭	6@3.50=21.0	
	중앙분리대	1.5	
	길어깨폭	2@2.0=4.0	
	총 폭 원	26.5m	

바. 주요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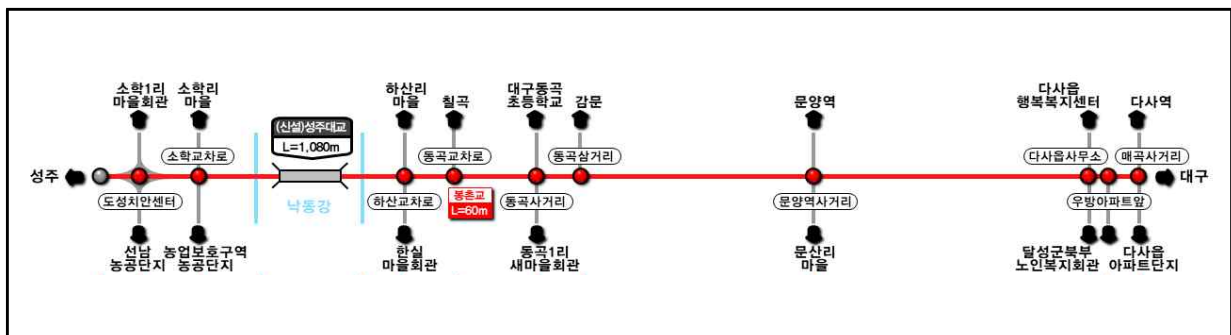
- 교량 : 4개소, 165.9m(신설 : 2개소, 130.0m, 확장 : 2개소, 35.9m)
- 출입시설 : 10개소(평명 : 6개소, 입체 : 4개소)

교량 계획

교량명	위치(STA.)	폭원(m)	연장(m)	교량형식
도성교 (양측확장)	0+378.141 ~ 0+392.041	9.0	13.9	RC 함형라멘교확장
동곡교 (철거후 신설)	3+780.000 (RAMP 구간)	13.9	60.0	ST. BOX Girder교 계열
봉천교 (일부신설)	3+851.000 ~ 3+921.000	14.9	2@35.0=70.0	합성형 라멘교 계열
부곡교 (편측확장)	7+678.000 ~ 7+700.000	11.4	22.0	RC 중공 Slab교 계열 (소하천 협의 중)

교차로 계획

구분	교차로명	위치(STA.)	간격(km)	교차로형식	접속도로
1	도성치안센터	0+400	600	불완전입체	선노로, 선남농공단지길
2	소학교차로	1+000	2,100	평면4지	나선로, 소학길 (공사중)
3	하산교차로	3+100	500	불완전입체	하목정길, 하산길 달구벌대로12길
4	동곡교차로	3+600	840	완전입체	지방도67호선
5	동곡사거리	4+440	320	평면4지	달구벌대로55길, 하빈남로
6	동곡삼거리	4+700	2,500	불완전입체	하빈 동곡~감문간도로건설공사 (공사 발주 예정)
7	문양역사거리	7+260	2,800	평면4지	문양역길, 달구벌대로92길
8	다사읍사무소	10+060	180	평면4지	달구벌대로, 매곡로
9	우방아파트앞	10+240	310	평면3지	우방아파트
10	매곡사거리	10+552	270	평면4지	다사역로



교차로 개념도

사업노선 위치도

제 2 장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의 대상지역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3. 0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2013.0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4.01, 환경부」 등을 참조하여 선정하였음
-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가능한 노선을 계획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노선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의 제반 환경 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설정한 후 주요 항목별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2.1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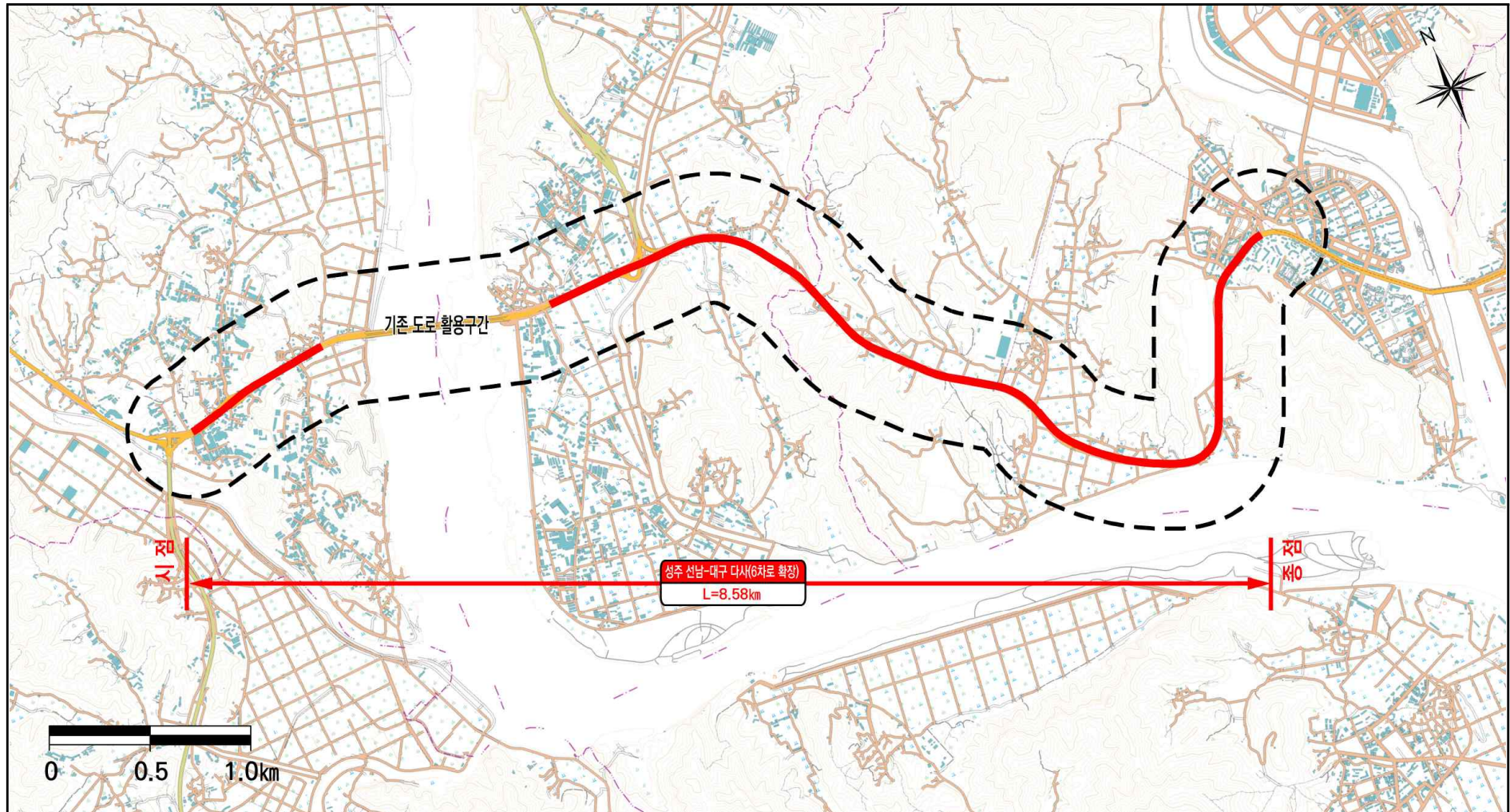
<표 2-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자 생 환	연 태 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생태연결성, 생물상 이동성 등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사업노선 경계로 500m 이내	
	자 연 환 경 자 산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노선 및 주변 지역	
대 기 환	기 상	◦사업노선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 -대기질 예측 기초자료로 이용	◦사업노선 및 주변 지역	
	대 기 질	◦사업시행전 사업노선 주변 대기질 현황 파악 ◦공사시 건설장비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정온시설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차량통행에 의한 배기가스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노선 경계로 500m 이내	

(표 계속)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고
대 환	기 경	온실가스 온실가스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지역 ·운영시 이동배출원의 온실가스 발생 지역	·사업노선	
	수 환	수질 및 수리·수문 ·사업시행전 사업노선 인근 수계의 수질 및 하천 현황 등 파악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부의 오수발생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 검토	·사업노선 및 주변 수계	
토 환	지 경	토지이용 ·토지편입 및 도로시설물 설치계획 파악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검토	·사업노선	
	토 양	·공사시 폐유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사업노선 및 주변 지역	
	지형·지질	·지형 및 지질분포현황 파악 ·공사시 토공량 발생 및 지형상 변화 ·비탈면안정성 검토	·사업노선 및 주변 지역	
생 환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지장물 철거,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 폐기물 등 발생	·사업노선 및 주변 지역	
	소음·진동	·사업노선 인근 주요 도로망, 소음·진동 현황 파악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발생 및 영향 예상지역 ·운영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 및 영향 예상지역	·사업노선 경계로 500m 이내	
	위락·경관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변화 발생(교량 등 구조물 설치 구간, 산지 절취부 등 지형훼손 구간 등)	·사업노선 및 주변 지역	
사회·경제 환	인구·주거	·인구현황 및 인구변화 여부 검토 ·가옥편입 등 이주민 발생 여부 검토	·사업노선 및 주변 지역	



<그림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2.3 평가항목의 설정

-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사업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고 환경영향요소를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제시된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 항목”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음
- 환경평가항목은 자연생태환경 2개 항목, 대기환경 3개 항목, 수환경 2개 항목, 토지환경 3개 항목, 생활환경 4개 항목, 사회·경제환경 1개 항목 등으로 총 15개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음

<표 2-2> 환경영향평가 항목 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중점평가항목	일반항목	제외항목
자 연 생 태 환 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
대 기 환 경	대기질	기상, 온실가스	악취
수 환 경	수질, 수리·수문	-	해양환경
토 지 환 경	지형·지질	토지이용, 토양	-
생 활 환 경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위락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사 회·경 제 환 경	-	인구·주거	산업
계	9	6	6

<표 2-3> 환경영향평가 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

구 분	항 목	선정 및 제외사유
중점평가항목 (8개)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의 서식 변화 검토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출현시 보호대책수립 등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훼손 검토
	대 기 질	◦ 공사시 투입 건설장비로 인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발생

(표 계속)

구 분	항 목	선정 및 제외사유
중점평가항목 (8개)	수 질	◦ 인근 수계 수질관련 보전지역 분포현황 파악 및 영향 검토 ◦ 수질오염총량검토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
	수리·수문	◦ 사업노선 구조물(교량 등) 설치로 인한 수리·수문 변화
	지형·지질	◦ 지형·지질의 현황조사 및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 토공량에 따른 수급계획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생활, 건설, 지정폐기물 등 발생량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경 관	◦ 보전지역 분포여부(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 지형변화 및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경관변화
일반항목 (7개)	기 상	◦ 계획의 특성상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대기질, 수질 등 영향예측 기초자료로 활용
	온실가스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토지이용	◦ 편입용지의 토지이용 변화 검토 ◦ 하천환경정비구간 토지이용계획 검토 ◦ 주요 구조물 설치계획 검토
	토 양	◦ 지장물 철거, 건설장비 가동에 토양오염 우려
	위 락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위락시설 현황 파악
	인구·주거	◦ 지장물 발생 및 지역단절 구간 발생
제외항목 (5개)	악 취	◦ 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악취발생원은 없음
	해양환경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음
	위 락	◦ 사업시행에 따른 위락 영향은 미미함
	일조장해	◦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장해 영향이 미미함
	위생·공중보건	◦ 사업시행에 따른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미미함
	전파장해	◦ 사업시행에 따른 전파장해에 영향 미미함
	산 업	◦ 사업시행에 따른 산업의 영향 미미함

2.4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함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조사·예측·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표 2-4>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예측·평가 방법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 식물상 - 식물 분포 및 식생, 식생보전등급 등 ◦ 동물상 -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현황 ◦ 육수생물상 - 사업노선 주변 수계의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 현황 ◦ 주요 법정보호종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경계로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기존(문헌)자료조사 ④ 조사시기 ◦ 계절별 조사(종별 생활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군별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현지조사)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분류군별 서식환경을 파악하여 이들 보호대상이 사업시행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평가
	자연환경자산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분포 현황조사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습지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등 관련법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국제협약 등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지역 또는 종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문헌)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 보호지역 분포시 영향 및 대책 수립 ◦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 및 대책 수립
대기 환경	기 상	① 조사내용 ◦ 기상자료 분석·정리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과 인접한 기상대 ③ 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통계연보 등) 조사	◦ 기상관측자료(기상연보) 통계 분석 - 인접기상대 ◦ 대기질모델링을 통한 영향예측 시 기초자료로 활용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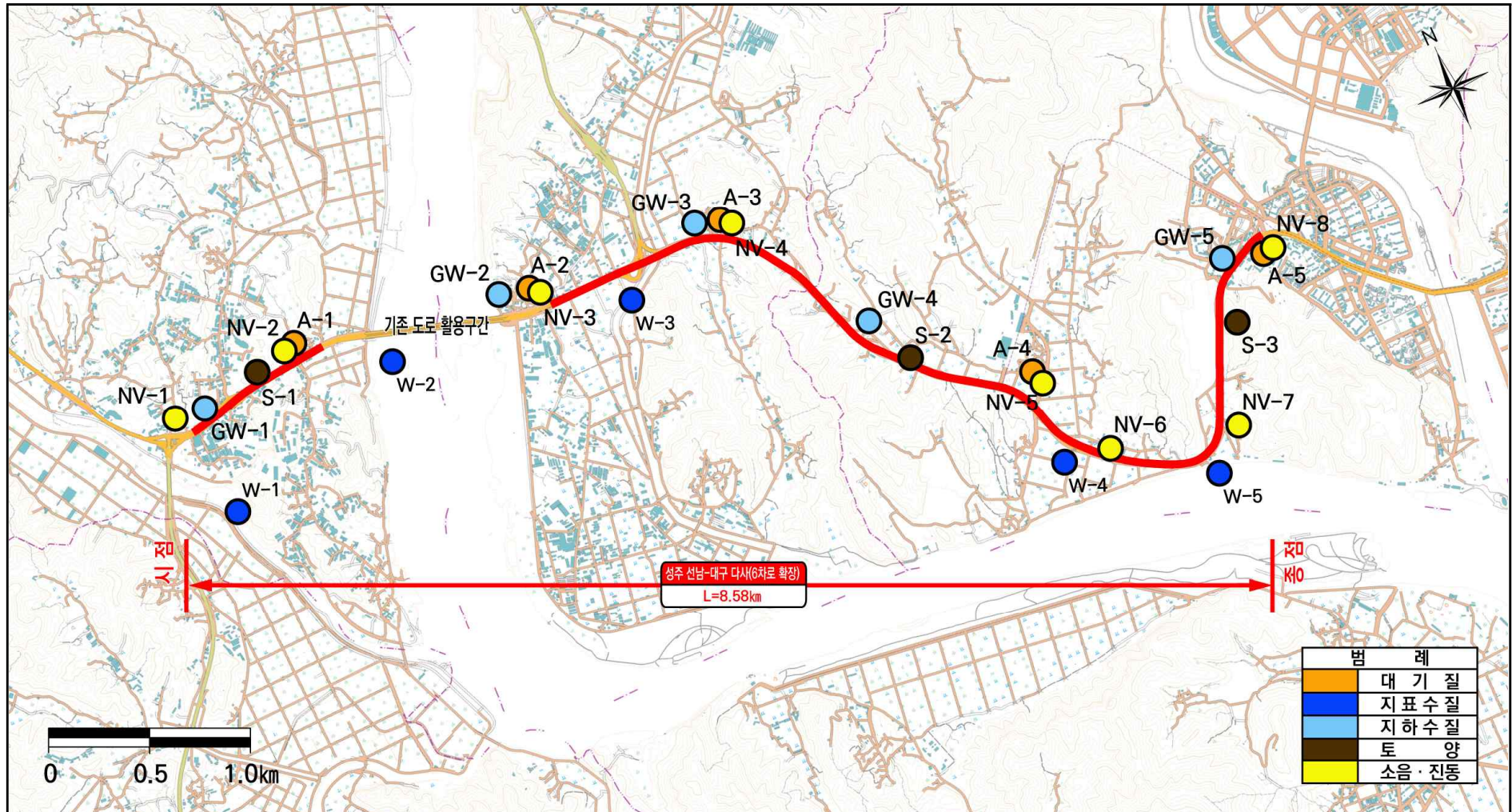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대 기 환 경	대기질	① 조사내용 ◦ 대기오염 영향대상시설 분포 및 대기질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경계로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④ 조사지점 및 시기 ◦ 대기질 : 5지점×3회(계절별 조사) -PM-10, PM-2.5, NO ₂ , SO ₂ , CO, Pb, O ₃ , 벤젠 (총 8개 항목)	◦ 영향대상 정온시설 및 대기질 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행에 따른 대기질 영향 예측 - 대기 확산모델(AERMOD)을 이용한 공사시 PM-10, PM-2.5, NO ₂ 예측 - 저감방안 수립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온실가스 배출원,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③ 조사방법 ◦ 기존(문헌)자료 조사	◦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2015, 환경부) 참조 ◦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및 저감방안 검토
수 환 경	수질 및 수리·수문	① 조사내용 ◦ 사업노선 및 주변 수계 수질 현황 - 지표수질, 지하수질 현황 조사 ◦ 수질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수자원 이용현황 및 지하수 이용현황 ◦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 수계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④ 조사지점 및 시기 ◦ 지표수질 : 5지점×3회(계절별 조사) -pH, BOD, COD, DO, SS, T-N, T-P, 대장균군수, TOC, Cd, CN, Hg, As, 유기인, Pb, Cr ⁺⁶ , ABS, PCB,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유량 (총 22개 항목) ◦ 지하수질 : 5지점×3회(계절별 조사)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분원성대장균군, Pb, F, As, Hg, Cr ⁶⁺ , CN, NH ₃ -N, NO ₃ -N, Cd, 페놀, 유기인, TCE, P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총경도, KMnO ₄ 소비량, Cu, 색도, pH, Zn, Cl ⁻ ,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SO ₄ ²⁻ (총 32개 항목)	◦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SS농도 증가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식을 이용하여 영향 예측·분석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량 산정(원단위법 이용) ◦ 운영시 비점오염원 발생 예측 및 대책수립

(표 계속)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토 지 환 경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 및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지장물 파악 ◦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편입용지 파악 ◦ 토지 및 지장물 보상대책 검토
	토 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도 현황 ◦ 토양오염우려시설 분포 현황 및 저촉여부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④ 조사지점 및 시기 ◦ 토양오염도 : 3지점×3회(계절별 조사) -Cd, Cu, As, Hg, Pb, Cr ⁶⁺ , Zn, Ni, F, 유기인, PCB, CN, 페놀, BTEX, TPH, TCE, PCE (총 17개 항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예측 ◦ 발생폐유 및 지장물 철거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 파악 및 대책 수립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및 지질특성 현황 ◦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보전가치 있는 지형·지질, 특이지형 분포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 깎기·쌓기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및 사면 최소화 대책수립 ◦ 비탈면 보강 및 보호대책 수립 ◦ 특이지형 분포시 보존대책 수립 ◦ 토공량 분석 및 토량처리계획 수립 ◦ 재료원 확보계획 수립
생 활 환 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 작업인부로 인한 폐기물 및 분뇨발생 및 처리방안 ◦ 지장물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및 훼손수목의 임목폐기물 발생

(표 계속)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생 활 환 경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현황(환경소음 및 도로소음) ◦ 주요발생 소음원 조사 ◦ 정온시설 분포현황(주거시설, 교육시설 등)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경계로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④ 조사지점 및 시기 ◦ 소음·진동 : 8지점×3회(계절별 조사) -소음, 진동	◦ 공사장비로 인한 소음·진동 예측 - 합성소음도 산출이론, 점음원의 거리감쇠이론, 진동파의 거리 감쇠공식 등을 적용하여 평가
	위락·경관	① 조사내용 ◦ 사업노선 인접 위락시설 현황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훼손 정도 및 변화 예측 - 가시권분석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조망점별 경관변화 예측 ◦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사 회 · 경 제 환 경	인구·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주거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문헌)자료 조사	◦ 통계자료 및 기 조사된 자료 분석



<그림 2-2>

환경질 측정 지점도

2.5 평가범위 및 방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은 사업계획, 지역특성, 입지특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2-4>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평가범위		평가방법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사업노선 경계로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 현장조사, 동·식물상 영향예측, 저감대책 검토
	자연환경 자 산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저촉 여부 검토
대기 환경	기 상	◦ 주변 기상대	최근10년	◦ 대기질 영향예측의 기초자료 활용
	대 기 질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사업노선 경계로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 공사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 대책 검토 ◦ 운영시 차량통행에 의한 배기가스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검토
	온 실 가 스	◦ 사업노선	공사시 운영시	◦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대책 검토 ◦ 운영시 이동배출원의 온실가스 발생 예측 및 저감 대책 검토
수환경	수 질 및 수리·수문	◦ 사업노선 및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 공사시 토사유출, 작업인부 오수 발생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검토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검토
토지 환경	토 지 이 용	◦ 사업노선	공사시 운영시	◦ 재산권 보상계획과 친환경적 시설배치 등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 변화 검토
	토 양	◦ 사업노선	공사시	◦ 공사시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지 형·지 질	◦ 사업노선	공사시 운영시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주요 생태축 조사 ◦ 사업노선 지형분석 및 생태축 훼손여부 검토 및 저감대책 검토
생활 환경	친 환 경 적 자 원 순 환	◦ 사업노선	공사시	◦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자원순환 처리계획 검토
	소 음·진 동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사업노선 경계로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 공사시 공종별(토공)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검토 ◦ 운영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 예측 및 저감 대책 검토
	위 락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인접 위락시설 영 향검토
	경 관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 경관변화 예측과 주변지역과의 이질감 최소화 대책 검토
사회 경제 환경	인 구·주 거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 변화 및 그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 검토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3.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결정내용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공개 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공개 장소
 - “환경영향평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성주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주민의견 검토내용 제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반영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평가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내용 포함

3.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한 후 대상사업 사업지역 및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성주군), 승인기관·협의기관(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로 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기간 : 초안이 접수 된 날부터 30일 이내

나.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공고 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공고 시기
 -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 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성주군 홈페이지
 -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 장소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각 지자체(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성주군)에 1개소 이상 설치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 설명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설명회 개최 주체
 - 사업시행자(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 설명회 시기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내
- 설명회 장소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 개최
 - ※ 사업시행자가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음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2) 공청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최 공고
 -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 결과
 - 사업시행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최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라. 주민 의견제출 방법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
- 의견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일 ~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의견
 -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마.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없음)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해당없음)
 -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해당없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해당없음)

바.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공개 내용
 -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
- 공개 시기
 - 사업계획 확정 이전
- 내용 게시 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성주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내용 게시 기간
 - 14일 이상 게시

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평가항목·범의 등의 심의결과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 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협의 구성 및 운영

- 일 시 : 2024년 01월 26일 ~ 2024년 02월 16일(서면으로 의견 취합)
- 운영위원 : 총 13명(위원장 포함)

<표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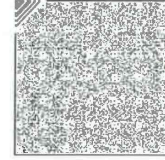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구 분		위원 구성	소 속	성 명	직 급
1	위원장	승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조 ○ ○	과 장
2	위 원	협의기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고 ○ ○	과 장
3	위 원	승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조 ○ ○	시설주사
4	위 원	민간전문가	(주)신성엔지니어링	이 ○ ○	상 무
5	위 원	협의기관 추천	한국환경연구원	박 ○ ○	부연구위원
6	위 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	달성군 환경과	이 ○ ○	과 장
7	위 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	달성군 건설과	배 ○ ○	팀 장
8	위 원	주민대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2리	김 ○ ○	이 장
9	위 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	성주군 환경과	김 ○ ○	과 장
10	위 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	성주군 건설과	김 ○ ○	팀 장
11	위 원	주민대표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소학2리	이 ○ ○	이 장
12	위 원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달성군자연보호협의회	장 ○ ○	감 사
13	위 원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성주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 ○	회 장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알림 및 서면심의 요청(성주 선남-대구 다사)

1. 도로계획과-253(2024. 1. 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불임과 같이 구성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심의안건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자료를 송부하오니 각 위원님께서는 '24. 2. 16.(금)까지 심의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과업진행을 위해 기한엄수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배포되는 협의자료는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검토안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명단 1부.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양식 1부.
 3. 환경영향평가준비서 1부.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신자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 달성군수(환경과장), 달성군수(건설과장), 달성군 매곡2리(김준규 귀하), 성주군수(환경과장), 성주군수(건설과장), 성주군 소학2리(이성동 귀하), 한국환경연구원장, (주) 신설엔지니어링(이은주 귀하), 달성군자연보호협의회(장영란 귀하), 성주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명길 귀하)

주무관 이현일 사무관대우 조옥유 도로계획과장 전결 2024. 1. 26.
협조자 조수용

시행 도로계획과-735 (2024. 1. 26.) 접수

우 48814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로 67(초량동) 3층 도로계획과 / <http://www.molit.go.kr/brocm>

전화번호 051-660-1114 팩스번호 051-660-1160 / hyun302@molit.go.kr / 비공개(5)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주 선남 ~ 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구 달성군 다사읍을 연결하는 국도30호선 일부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본 심의 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평가준비서(11~13쪽) 평가 대상지역 설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미흡하므로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유사사례 분석 또는 과학적 분석방법 등을 통해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참고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계획노선 일부 구간에 비탈면이 발생할 것으로 제시된바, 장기적인 비탈면 안정을 우선으로 하여 땅깍기 비탈면 높이를 줄일 수 있는 비탈면 보강공법을 적절히 검토·제시하여야 함.
- 하천변 통과시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적합한 교량형식을 선정하여야 함.
- 부곡교 구간의 비교1안(선정안)에서 폐도가 발생할 것으로 제시된바(평가서 79쪽), 폐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폐도부지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활용 및 처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금회 사업노선이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2에 해당될 경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현황조사(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동식물상 등) 지점은 공사 및 운영시 영향예측 지점,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 및 운영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영향 예측시 누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과 관련하여 수리·수문 평가항목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소하천정비계획 등을 준용한 계획빈도별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하여 제시하고 하천횡단 교량건설계획에 따른 홍수위 상승, 하천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1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함.
- 주민 설명회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으로 인한 지역적 환경영향을 알기 쉽도록 전문용어, 수치, 조사결과 등을 순화한 ‘평가요약서(사진·그림 활용, 수치 비교 등)’를 작성·제공하여야 함.

5. 기타

-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저가발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하고자 평가 용역의 저가발주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음.
 - 평가서에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
 -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위한 운영지침(2012.10, 환경부)」 참고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동 심의의견의 반영 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각종 도면, 사진 등은 육안판독이 용이하도록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범례를 명시하여야 함.
 - 현행화된 환경관련 보호지역과 사업지구와의 이격거리를 나타내고 도면 등은 육안판독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확대,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범례를 명시, 환경현황 측정지점을 명확히 표시

2024. 2. 15.

심의위원 :

◦ 신성엔지니어링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주 선남 ~ 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노선 확장에 따른 산지훼손 등 자연환경, 정온시설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범위의 현황 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주변지역 평가범위 선정의 기준을 사업노선 중심과 사업노선 경계로 중복하여 표현하였음. 사업노선 경계로 부터 범위설정이 적정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노선비교시 확장에 따른 산지 훼손, 사면발생, 시점부 영암지맥 훼손 등 지형변화 검토바람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조류조사는 사업노선 인근의 철새도래지 이용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노선이 두 개의 행정구역(달성군, 성주군)에 위치하므로 공람 및 주민설명회 장소 선정시 해당지역의 주민편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충분한 협의를 시행하기 바람.
○ 의견수렴 대상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추가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

□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 -

2024. 02. 1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 한국환경연구원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노선 인근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및 대구광역시의 상수도로 사용되는 매곡취수장 인근을 통과하고 있는 바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사업으로 인해 야기할 수 있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측정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대기항목 현황조사는 사업노선 중심으로 500m 범위에서 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평가 범위는 300m로 계획하고 있는 바 두 범위를 일치시켜 평가범위를 500m로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획노선 8+600 인근으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연결하여 통과하고 직하류에 매곡 취수장이 위치하므로 인근지역 공사 시 우천 등으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운영 시에도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수질 측정지점 중 W-5 지점을 본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8+600 인근으로 이동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 없음

□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 의견 없음

2024. 2. 15.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 달성군 환경과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의견은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안의 내용대로 사업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세부설계 단계 시 환경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여 적절한 환경오염 저감 대책 수립이 필요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필요.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 없음.

2024. 2. .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 달성군 건설과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의견은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안의 내용대로 사업 과정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시공 단계 시 적용가능하고 적절한 환경오염 저감대책 수립이 세부설계에 반영되어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걱정한 것으로 판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 법령 절차 이행 필요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없음

2024 . 2 .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 달성군 매곡21리 이장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상지선정과 대한 그리고 평가에 대한 전반적 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주민대응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보이고 공사전후의 시각화 자료를 제시하여 주민혜를 증진할 필요를 판단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이 적절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경제건설임지대안중 여타 단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고 민원 사항을 반영한 배리안(배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를 공사와 병행하도록 권유하여 평가항목과 범위, 방법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법정된 의견수렴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공사시 주민불편과 안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 중점(우방) 주변 1~3안에 따른 공사로 도로상황을 이미지화하여 주민혜를 증진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

2024. 2. 15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인)

◦ 성주군 환경과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제시된 평가서에 따른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보전방안, 평가항목 등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등에 대한 주변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는 상습 지·정체 발생지역으로 도로의 확포장이 필요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인

- 도로설치로 인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공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함.
- 도로구간 주변 정온시설(주거시설, 축사,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에서 도로공사·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제시된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에 따라 주변 주민피해 및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가되어야 함.

4.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기타의견 없음

□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 수질오염총량 협의(환경과) 완료 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2024. 2. .

환경과장

◦ 성주군 건설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사업지구에 인접한 정은시설, 농경지 등 영향권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 사업노선 주변으로 주거지 등이 인접하여 위치하므로,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 마련
- 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목표 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가적 저감대책 마련·시행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 노선 및 주변 지역 소음·진동 반경 300m, 대기질 반경 500m 등으로 설정 하였으나, 사업노선 인접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설정하시기 바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으로 인한 경관 훼손 최소화 및 차량 증가에 따른 소음 및 대기질 오염 차단 조치
- 공사 시행 시 작업차량 및 이동 차량 혼재로 인한 비산먼지 대책 마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지하수질 조사지점이 도성리(GW1)에만 있는데, 소학리와 선원리에도 추가로 조사
- 대기질 조사지점이 소학리(A-1)에만 있는데, 도성리와 선원리에도 추가로 조사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 최대 수렴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6. 기타

- 현황상 사업노선과 인접하여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행 시 주변 인근마을 및 농경지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평가항목 결정

□ 행정사항

- 초기우수 처리와 관련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마련 검토
- 백천 및 낙동강으로 초기우수유입에 따른 배수시설 영향 분석 검토

2024. 2.

1. 8

(성주 선남 ~ 대구 다사 국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 성주군 소학2리 이장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교통체증은 해소되지 않

소학2리는 인근민정주택 밀집 지역이라 소음·충격으로 불편 초래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성주군 선남면 소학2리, 선원2리 중심길로 ⇒ 인근민정주택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소학2리 도로 100m 이내

○ 차량증가 소음 배기가스 차단 방지

선원리 " 300m 이내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주택, 농지, 농가정원, 농촌, 동로버스

조사시기 (3월 ~ 8월) 조사횟수 2~3회 방법 (주민직접대면)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교 건너 도로 버스 등한 지반 토사 우려
응답 등 무너짐 방지 대책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성주 대교 건너 동선 등 강도 위험으로 평상

성주군 따끈온트장 생가면 대형 버스 등 차량증가

소학2리 교차점에서 돌아 들어오면 마을 앞길 주택가 위험도가 많다

□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농사철에는 하루도 30%에 유동인구는 많고
도보, 자전거 이용자는 사람이 많습다

○

2024. 7. 2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

(인)

◦ 달성군자연보호협의회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기본계획 및 주변지역, 다양한 보호종, 수경선전 및 대항지역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지 골라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 지역 범위 적정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대안적 비교 가능 적정.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평가항목 적정함. (적당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계획사항에 따른 현수막 설치. 주민설명회를 통해, 실질적 의견 수렴은 적당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 없음.

☐ 행정사항 (승인기관, 사업자)

-

20 . . .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귀

◦ 성주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성주 선남~대구 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사업노선은 선남면과 다사읍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성주 대구 유일한 간선도로로 신규택지 조성에 따른 교통체증의 심각 및 지역발전에 용이하며 대상지 특성상 기존 도로의 확장으로 생태적, 지형적 민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단, 사업 진행에 따라 발생 되는 대기질, 소음, 진동 기준의 철저한 적용, 확인 및 현장 환경에 맞는 구체적 관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주변 인근주거 관련 영향 관계를 고려한 일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환경 보전방안의 대안
 - 공사 진행 시 발생 되는 대상 지역별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야간, 주말, 출,퇴근시간 공사지양, 공사이동로 통행확보, 작업자관리 등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항에 따른 항목과 비교 확인결과 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등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절차상 의견수렴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5. 기타(평가 준비서 작성 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기타 의견 없음

□ 행 정 사 항 (승인기관, 사업자)

○

2024. 2. 16.

성주선남~대구다사 국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